



# 보행통로가 아닌 곳으로 이동 중 대형 개구부로 떨어짐

- ⚙ 해체된 거푸집 정리 후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지정된 통로가 아닌 구간인 안전난간을 넘어 이동 중 바닥개구부(3.9m×1.5m)에 놓여 있는 합판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약 10m 아래로 떨어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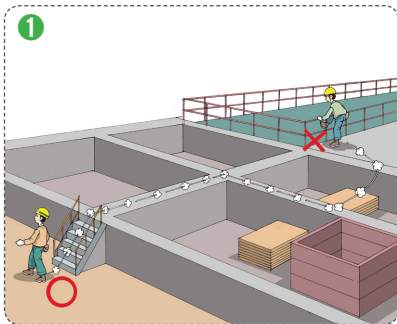
## 재해발생 원인

- ▶ 현장에서 정해진 통로를 사용하여 이동하여야 하나 시간단축 등의 사유로 정해진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는 대형 개구부(3.9m×1.5m)를 넘어 임의 이동 중 떨어짐
- ▶ 개구부 덮개는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나 합판+청비닐을 걸쳐 놓는 등 개구부 관리가 미흡



## 재해예방 대책

- ▶ 현장 내 작업자는 현장에서 지정한 통로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등 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 및 규정을 준수<sup>1)</sup>
- ▶ 개구부 덮개는 움직이지 않는 구조로 설치<sup>2)</sup>
  - ※ 빗물 침투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판+청비닐을 고정하지 않았으나 작업자의 떨어짐 방지를 위해 개구부 덮개는 고정 설치 검토



참고법령 및 기준 ·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

# 작업장 통로 안전기준

## 통로란?

- ▶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반 장비, 차량 등이 다닐 수 있도록 구획된 공장의 바닥, 가설물, 접근 설비 등을 말하며, 옥내통로, 가설통로, 사다리식 통로, 갱내통로, 선박과 안벽 사이의 통로 등이 있다.

## 통로설치 시 일반사항

- ▶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는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것
- ▶ 통로의 주요한 부분에는 통로를 표시할 것(비상구·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에 비상용 표시)
- ▶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할 것
  - ※ 갱도 또는 지하실 등에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 시 제외
- ▶ 통로 설치 시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넘어짐 위험이 없을 것
- ▶ 통로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 장애물이 없을 것
- ▶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 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
- ▶ 통로바닥에 전선 또는 이동전선의 설치 및 사용을 금지할 것
  - ※ 전선의 절연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 시 제외
- ▶ 주행 크레인 또는 선회 크레인과 건설물 또는 설비와의 사이에 통로의 폭은 0.6m 이상일 것  
(건설물 기둥에 접촉하는 부분은 0.4m 이상)
- ▶ 건설물 등의 벽체와 통로의 간격은 0.3m 이하일 것



## 가설통로의 일반사항

- ▶ 견고한 구조일 것
- ▶ 떨어짐 위험장소에는 안전간판을 설치할 것
- ▶ 경사는 30도 이하일 것(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에 손잡이를 설치한 때 제외)
- ▶ 경사가 15도 초과 시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일 것
- ▶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 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
- ▶ 높이 8m 이상인 건설공사용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

